

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3년 05월 31일

신당동장 인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유 *연	유 *연 1973-07-22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1길 (신당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3-05-31
유 *연	조 *진 1968-12-24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1길 (신당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3-05-31
유 *연	조 *경 2004-05-13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1길 (신당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3-05-31